

2009.6.19(금요일)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


보도자료

- ▶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임영섭
- ▶ 근로자건강보호과사무관 이정인

TEL : 6922-0968
 E-MAIL : govgiraf@molab.go.kr
 FAX : 02)6922-0973

- ▶ 2009. 6. 18. 배포
- ▶ 총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7월을 「석면안전 강조의 달」로 운영 - 달라지는 석면제도 집중 교육·홍보와 함께 일제점검 -

□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, 7월 한 달을 「석면안전 강조의 달」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·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

□ 8월 7일부터 시행될 석면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
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고자 할 경우,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,
 -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,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·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석면해체·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,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·제거해야 한다.

- 또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,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·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(석면농도기준, 0.01개/cm³)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□ 한편, 오는 7월을 「석면안전 강조의 달」로 운영하는 노동부는

-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, 안전공단직원,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, 석면조사·해체·제거업체,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고

-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·제거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·제거시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

- 또한 신문,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석면 함유여부 사전 조사 및 석면해체·제거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

-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·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,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.

□ 노동부 정현욱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 운영될 「석면안전 강조의 달」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“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※ 참고로,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·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, 바닥타일,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폐암 및 석면폐증,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.

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“석면 먼지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그 튼튼한 물성 때문에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”고 경고했다. 다른 발암물질은 몸속에서 대사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석면은 그렇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.

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(10년~30년)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,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.

【붙임1 : 달라지는 석면제도 주요내용】

【참고자료1】



□ 건축물 철거·해체 전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해 사전조사 해야 함

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

※ 건축물: 연면적 50㎡ 이상(주택 및 부속건축물: 200㎡), 설비: 단열재, 보온재 등 면적의 합15㎡ 또는 부피의 합 1㎡이상, 파이프보온재의 길이 합이 80m이상

-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
 - ▶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·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▶ 석면조사 미실시로 적발시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까지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석면해체·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함

-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·제거하여야 함

※ 석면함유(1%초과) 벽체재료,바닥재,천정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㎡이상,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에 함유된 석면이 1%초과, 석면함유(1%초과)단열재·보온재 등 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이상,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

- ▶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이하 벌금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,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 - ▶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원 과태료, 작업기준 준수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석면해체·제거 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준수해야 함
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작업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(석면농도기준, 0.01개/cm)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
 - ▶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
-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할 수 없음
 - ▶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